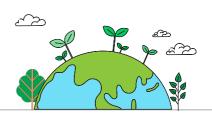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KOTRA자료 23-051

# EU 산림전용방지 00000 0000





# CONTENTS

Part 1 <b>EU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주요 내용</b>	02
01. 입법배경	02
02. 입법동향	03
03. 규제 적용 품목	03
04. 적용 대상	04
05. 기업의무 (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의무, 정보제공의무)	04
06. 국가별 위험도 평가	06
07. 제재	07
08. 시행 일정	07
09. 산림전용방지규정 법안 조항	08
Part 2 <mark>산림전용방지규정 Q&amp;A</mark>	10
Part 3 <b>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b>	19
01. KOTRA 지원 사업	19
02.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20
03. 알아두면 유용한 ESG 규정 체계	21

Part 1

#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주요 내용

### EU 산림전용방지규정

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의 공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으로 동 규정은 산림전용(deforestation)\*과 황폐화(degradation)\*에 관련된 특정 상품과 제품의 EU 시장 출시 및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는 범안입니다.

- \*산림 전용 인간의 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산림이 농업, 가축 사육 등을 위한 농지로 전환되는 것
- \*산림 황폐화 원시림이 인공림(조림지 및 기타 산림)으로 전환되어 산림피복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 01 입법 배경

-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420만㎞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특히 콩, 소고기, 팜유, 목재 등은 전 세계 열대 산림 파괴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로 EU는 이러한 관련 제품의 전세계 1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EU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림전용방지규정을 입법했습니다.
- 산림전용방지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산림에서 새로이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규제 하기 위해서 EU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규제 품목을 역내 시장에 수입, 생산, 판매, 수출하는 역내 기업에 실사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역내 규제 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 공급망에 있는 기업은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해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해당 공급망의 산림 파괴 및 관련 위험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위험이 있을 경우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02 입법동향

- 2021년 11월 17일 EU 집행위 초안 제안
- 2022년 6월 28일 EU 이사회 일반적인 접근방식 채택
- 2022년 9월 13일 EU 의회 투표 통해 입장 채택
- 2022년 12월 6일 의회-이사회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 2023년 4월 19일 EU 의회 투표 통해 승인
- 2023년 5월 16일 EU 이사회 최종 승인
- 2023년 6월 9일 EU 관보 게재
- 2023년 6월 29일 법안 발효



• EU 집행위는 2021년 11월 17일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5일, 입법 기관 간 합의를 거쳐, 산림전용방지규정이 2023년 5월 16일 최종 승인되었으며 6월 29일 법안 발효가 완료 되었습니다.

### 03 규제 적용 품목

•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총 7개 품목과 관련 파생상품을 규제 품목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품목	주요 파생 상품
소	소, 냉장냉동 소고기 및 부속, 원피, 가죽 등
코코아	코코아두, 껍질, 페이스트, 가루, 버터, 초콜릿, 코코아 함유 식료품 등
커피	커피
팜유	팜유, 팜넛, 조유, 팜 핵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 등
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고무 타이어, 고무로 만든 판, 끈 등의 제품
대두	대두, 대두유,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 등
목재	원목, 땔나무, 목재, 섬유판, 합판, 목재 상자, 목재 가구, 펄프, 종이와 판지, 인쇄된 제품 등

<sup>\*</sup> 각 규제 품목의 구체적인 파생상품과 HS CODE는 2장 Q&A참고

### 04 적용 대상

- 법안은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Operator)**: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수입, 수출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역외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역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있는 수입업자가 사업자로 간주)
  - **유통업자(Trader)**: 위의 사업자의 상업활동을 위해 제품 출시 이후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사업자와 유통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시행 의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은 2013/34/EU 지침의 3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현행지침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총액이 2천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초과, 회계연도 평균 직원 수가 250명 초과, 이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의 대기업 정의 기준

### 아래 3개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대차대조표 총액 (Balance sheet total)

2천만 유로 초과

순 매출액 (Turnover)

4천만 유로 초과

평균 직원 수 (회계연도 최대 기준)

250명 초과

### 05 기업의무 (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의무, 정보제공의무)

 산림전용규정에 의하면 모든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각자에게 적용된 의무를 이행 하여 취급하는 제품이 산림 파괴 관련 위험성이 없고, 원산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여 실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 진술서에는 제품 및 원자재의 지리정보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규제 품목 역내 시장 출시, 판매가 모두 금지 됩니다.

###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

규제 품목의 역내 출시를 위해서는 국가별 세관 및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유통업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역내 규제 품목의 상품을 출시하는 사업자는 상품 및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거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만약 취급하는 제품이 포함된 제품의 실사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이미 실사 신고서가 제출된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해당 실사 신고서를 참조하여 관할 당국에 제공하고, 추가적인 실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실사를 거쳐 해당 제품의 실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통업자는 이에 비해 가벼운 의무가 적용되나 대기업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대기업 (비 중소기업, non-SME) 사업자로 취급하여, 실사 및 실사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동일 제품 혹은 관련 제품이 이미 출시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실사 선언서를 참조 할 수 있으나 관련 실사 선언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실사 선언서 포함 필수 정보

- 기업정보 (상호, 주소, EORI 번호)
- 제품의 HS CODE를 포함한 상품명과 수량
- 제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 국가 및 지리정보 (소의 경우 사육지를 포함한 모든 작업장)
- (기존 제출된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는 경우) 해당 실사 진술서의 참조 번호
- 실사 선서
- 서명



### 우리기업의 체크√ 포인트

약 역내 사업자 및 유통업자가 아닐 경우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규제 품목을 역내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 및 파트너사의 의무 적용으로 인해 요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법안 채택 및 시행시기를 잘 확인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실사 의무

-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해서 사업자는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를 시행. 매년 실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 및 관련 보고서 작성이 필요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사업자는 공급망에 산림 파괴 및 원산지 국가 법률 위반 위험이 있을지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성이 클 경우 에는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만약 실사를 통해 해당 공급망에 관련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역내 출시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준법 감시인 임명을 포함하여 관련 위험 관리 보고, 기록 보관, 내부 규제 수립, 독립적인 감사 수행 등이 있습니다.

### 관련 정보 제공 보관 의무

•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향후 관할 당국의 실사 신고서 및 실사에 대한 검토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제출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에 더해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도 부가 됩니다.

< J	해	주체	벽	적용	0	早	>

		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 및 관련조치	관련 정보 보관 의무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사업자 -	대기업	0	0	○ (관련 모든 정보)	0
시티시	중소기업	○ (기존 제출 선언서 참조)	○ (조건 부 면제 <b>*</b> )	○ (관련 모든 정보)	X
유통	대기업	○ (기존 제출 선언서 참조)	0	○ (관련 모든 정보)	0
업자	중소기업	X	X	○ (간소화된 정보)	X

<sup>\*</sup>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만약 취급하는 제품이 포함된 제품의 실사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이미 실사신고서가 제출된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추가적인 실사는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내 관련 제품이 없고, 처음으로 역내 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자도 똑같이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 관련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06 | 국가별 위험도 평가

- 집행위는 제품 원산지 국가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집행위는 모든 국가를, 저 위험, 표준 위험, 고 위험 3개 범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도 평가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법안이 발효되는 2023년 6월 29일부터는 모든 국가가 표준 위험국으로 분류 됩니다.
- 위험도를 산정하는 평가 기준은 해당 국가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비율과 규제 품목과 관련된 농지 확장 비율, 규제 품목의 생산 동향 등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 만약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련 위험성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위험 국가로 분류, 관할 당국은 고위험 국가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및 관련 제품 수량의 9%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할 당국의 최소 점검 비율은 표준 위험 국가는 3%, 저 위험 국가는 1%로 낮아집니다.
- 또한 저 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관련 공급망의 복잡성과 규제 우회 위험(고위험 및 표준 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유 및 우회 수입 가능성) 평가만 의무이며,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조치 시행이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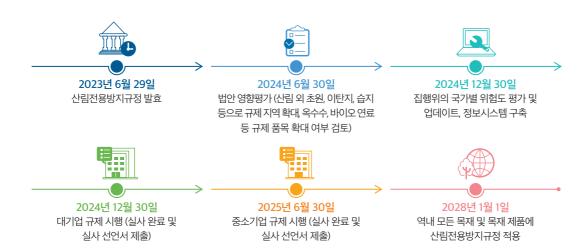
• 단, 저위험 국가의 제품을 사용한 경우라도, 관련 공급망의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거나, 31조에 따른 제보가 들어올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할 당국에 즉시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위험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제재 **07** |

- 규제를 위반하고, 산림 파괴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관련 제품의 가치에 비례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벌금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벌금의 최대 금액은 해당기업의 전 회계연도의 전체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상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관련 제품과 수익 몰수 및 최대 12개월동안 공공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심각한 법 준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제품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 됩니다.
- 만약 고위험 국가나 표준위험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자재가 저위험 국가를 경유하여 저위험 국가 제품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관할당국은 즉각적인 임시조치 시행, 세관에서 관련 제품의 유통, 수출, 반출을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시조치는 영업일 3일,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종료 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관할 당국은 위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 08 시행 일정

-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은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어, 18개월 이후인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의 적응기간이 추가되어 2025년 6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 기존 EU 목재규정의 적용을 받던 목재 및 목재제품의 경우, 산림전용방지규정의 발효일 (2023년 6월 29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 한해, 목재규정 폐지일(2024년 12월 30일)이후로도 2027년 12월 31일 까지 기존 목재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재 제품에 대한 산림전용방지규정 적용은 202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up>\*</sup> 위의 향후 시행 일정 중 관련 평가 및 검토, 정보 시스템 구축 일정은 마감시한으로 그 이전에 시행 될 수 있습니다.

## 09 | 산림전용방지규정 법안 조항

구분		내용
	1조	주제 및 범위
1장. 일반 조항	2조	정의
	3조	금지조항
	4조	사업자 의무
	5조	유통업자의무
	6조	공인 대리인
	7조	제3국의 사업자가 역내 시장에 출시할 경우
그나 내어지 때 오른어지 이미	8조	실사
2장. 사업자 및 유통업자 의무	9조	정보 제공 요건
	10조	위험 평가
	11조	위험 완화
	12조	실사 체계 구축 및 유지, 보고, 기록 보관
	13조	간소화된 실사 요건
2자 취임그 미 과하다그 이미	14조	관할 당국 의무
3장. 회원국 및 관할 당국 의무	15조	회원국 간 기술 지원, 안내 및 정보 교환

구분		내용
	16조	점검사항 수행 의무
	17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제품 취급 요건
	18조	사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
	19조	중소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
그자 들이그 미 교육 다그 이미	20조	비준수 사례 관련 관할 당국의 비용 회수
3장. 회원국 및 관할 당국 의무	21조	관할당국 및 점검 주체 간 협력 및 정보 교환
	22조	회원국의 보고
	23조	임시 조치
	24조	규정 위반 및 비 준수 시 시정 조치
	25조	페널티
	26조	통제 수단
4장. 규제품목의 시장진입 및 퇴출 절차	27조	세관 및 관할 당국간 협력 및 정보 교환
-12 E-1	28조	전자 인터페이스 개발
5장.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 및	29조	국가별 위험도 평가
제 3국과의 협력	30조	제 3국과의 협력
6장. 규제 위반 우려 신고 및	31조	규정 위반 우려 시 관련 증거 제출 및 조치
해결 조치	32조	법적 접근
7장. 정보시스템	33조	정보시스템 구축
8장. 법안 시행 이후 검토	34조	위임권 행사
	35조	집행위 위임 권한
9장. 최종조 <b>항</b>	36조	관련 위원회 절차
98. 최공조명	37조	기존 목재규정 폐지
	38조	발효 및 시행 일정
첨부1.		규제품목 및 파생 상품
첨부2.		실사 선언서

<sup>\*</sup>최종 법안 원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 L\_.2023.150.01.0206.01.ENG 에서 확인가능



# 산림전용방지규정 Q&A

- Q01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어느 기업에 적용되나요? 역외 기업에도 산림전용방지규정이 적용 되나요?
- Q02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Q03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어떤 품목에 적용되나요?
- Q04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시행으로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Q 05 모든 품목에 같은 규제가 시행되나요?
- Q06 국가별 위험도 평가는 무엇인가요? 위험도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Q07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08 위험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09 실사 선언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Q 10 어떤 정보를 보관 혹은 공시 해야 하나요?
- Q 11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Q 12 현재 입법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향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동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단순 참고자료로 KOTRA의 공식 의견이나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또는 규정 해석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Q1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어느 기업에 적용되나요? 역외 기업에도 산림전용방지규정이 적용 되나요?

A 산림전용방지규정은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에 적용될 예정 입니다. 규제 품목을 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이미 실사 선언서 제출을 거쳐 역내 수입된 원자재를 사용하였더라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적용됩니다.

※에시 A사가 역내 코코아 가루 (HS Code 1805)를 수입하고 B사가 이를 사용하여 초콜릿 (HS Code 1806)을 만들어 역내 판매 할 경우, A사와 B사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코코아 가루를 사용 하여 C사가 비스킷 (HS Code 1905)을 만드는 경우, A사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나, 비스킷은 규제 품목 이외의 제품이므로 C사는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제 품목의 사업자는 상업적 활동을 위해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수입, 수출, 출시, 판매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만약 역외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역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가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유통업자는 이러한 사업자의 상업활동을 위해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역외 관련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법안의 적용대상 밖에 있으나, 역내 기업의 실사 및 선언서 제출 의무에 따라 관련 제품의 공급망 및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은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어, 대기업의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인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의 적응기간이 추가되어 2025년 6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목재규정의 적용을 받던 목재 및 목재제품의 경우, 산림전용방지규정 발효일인 2023년 6월 29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기존 목재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산림전용방지규정 적용은 202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시행 시 규제 품목의 역내 출시 및 수입, 수출, 유통에 실사 선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그 이전까지 실사 및 위험 평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법이 적용되는 역내 기업의 의무 이행을 위해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관련 역외 공급망 기업에 자료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산림전용방지규정의 규제 품목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총 7개 품목과 관련 파생 상품으로 소고기, 코코아 부산품, 커피, 팜유, 고무 타이어, 목재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규제품목과 파생상품의 HS Code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품목	파생상품	HS Code
	살아있는 소	010221, 010229
	쇠고기 (신선한것,냉장 한정)	0201
	쇠고기 (냉동 한정)	0202
	소의 냉장 냉동한 식용 설육	020610,
소	소의 냉장 냉동한 간	020622
	소의 냉장 냉동한 기타 설육	020629
	소나 마속 동물의 원피	4101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소나 마속 동물의 원피	4104
	소나 마속 동물의 가죽 (파치먼트 가공가죽 포함)	4107
	코코아두	1801
코코아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Waste	1802
	코코아 페이스트	1803

규제품목	파생상품	HS Code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4
코코아	코코아 가루	1805
	초콜릿과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1806
커피	커피	0901
	팜유와 분획	1511
	팜너트와 핵	120710
	조유	151321
	기타 야자유,팜핵유,바바수유	151329
	팜너트와 핵 부산물	230660
Th. 10	순도 95%이상 글리세롤	290545
팜 나무 -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염	291570
	기타 포화비환식모노카르 복시산과 무수물	291590
	스테아르산(공업용)	382311
	올레산(공업용)	382312
	기타 공업용 정제 애시드유	382319
	공업용 지방성 알콜	382370
	대두	1201
콩	채유적합종자와 콩가루	1208
0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고체 유박	2304
	천연고무	4001
	가황하지 않은 합성고무	4005
	기타 형태 미가황 고무	4006
	고무실, 고무끈	4007
	경질고무 제외 가황고무 판	4008
고무	기황 고무 컨베이어 벨트	4010
	고무로 만든 공기압 타이어	4011
	고무타이어	4012
	고무제의 내관	4013
	가황고무 의류,액세서리	4015
	기타 가황 고무제품	4016
	각종 형태의 경질 고무	4017
	땔나무	4401
목재	숯	4402
숙세	원목	4403
	말뚝류	4404

복모와 목분 4405     철도용, 궤도용 반침목 4407     제재목 4407     베니어용 단판 4408     성형목재 4409     파티클보드 4410     점유판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 상자 4415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 상자 4415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그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 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자(기구의 940330,940350,940350,940360,940391,	규제품목	파생상품	HS Code
제재목 4407     비니어용 단판 4408     성형목재 4409     파티클보드 4410     점유판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가구 4418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품(옷걸이, 관 등) 4421     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목모와 목분	4405
배나이용 단판 4408     성형목재 4409     파티클보드 4410     섭유판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보는 공구 4418     목재 나무로 만든 공구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철도용, 궤도용 받침목	4406
성형목재 4409 파티클보드 4410 섬유판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제재목	4407
파티클보드 4410 섬유판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가구 4418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베니어용 단판	4408
점유판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가구 4418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성형목재	4409
함판, 베니어 패널 4412 고밀도 목재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파티클보드	4410
지원도 목재 4413 고밀도 목재 4414 무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가구 4418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섬유판	4411
지원 기원		합판, 베니어 패널	4412
목재 보다는 포장케이스,상자 4415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가구 4418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고밀도 목재	4413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기구       4418         목재 식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펼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4414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목재 가구 4418  목재 시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상자	4415
목재 가구4418목재 식기구, 주방용품4419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4420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4421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47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48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49의자(제 9402호는 제외)9401목재가구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목재	나무로 만든 통	4416
목재 식기구, 주방용품 4419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목재로 만든 공구	4417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목재 가구	4418
고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목재 식기구, 주방용품	4419
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마르퀘트리 목재품,상감세공 목재품	4420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48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49의자(제 9402호는 제외)9401목재가구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그 밖의 목재제품(옷걸이, 관 등)	4421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49의자(제 9402호는 제외)9401목재가구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펄프(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7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종이와 판지(대나무, 폐기물, 재활용 제외)	48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제품	49
		의자(제 9402호는 제외)	9401
73U DW 31D		목재가구	940330,940330,940350,940360,940391,
소립식 복재 건물 940610		조립식 목재 건물	940610

### Q4 Vel전용방지규정의 시행으로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 기존 EU는 기존에 불법 벌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EU 목재규정(EU Timber Regulation, EU 995/2010)을 제정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재규정은 EU시장에 불법 벌채와 관련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시장 출시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역내시장 출시 사업자에 조사와 실사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입법 으로, 기존 EU 목재규정은 2024년 12월 30일 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EU 목재 규제가 적용되던 제품의 경우에는 발효 이전 생산된 제품에 한해 3년간의 신규 규정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시행으로 기존 규제 품목인 목재 외에도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등 총 7개 품목으로 규제가 확대 됩니다. 그리고 불법과 합법 여부를 막론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기존 산림에서 새로이 농지로 전환되거나 조림지로 전환된 곳에서 생산된 규제품목의 역내 출시가 금지됩니다.

### <기존 EU목재규정과 신규 산림전용방지규정 비교>

	기존제도	신규제도
규제명	EU 목재 규정	EU 산림전용방지규정
11/11/0	(EU Timber Regulation, EU 995/2010)	(EU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2023/1115)
규제 품목	목재 및 목재 제품	팜오일, 대두, 목재, 소, 코코아, 고무, 커피
11/11 67	그에 ᄎ 그에 세습	(구체적인 상품 목록 및 HS Code는 Q&A 내용 참조)
규제 기준	제품이 불법 벌채와 관련 있는지 판단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ㅠ세기군	제품이 출납 글제되 단단 났는지 단단	신규 전용 및 황폐화된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판단
규제 대상	역내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	역내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
규제 내용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및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및 관련 기록 보관
π세네6	관련 기록 보관	원산지의 지리적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된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
제재	제품 압수 및 거래 중지	제품 및 관련 수입 압수, 거래 및 수출 금지
시시	피해에 상응하는 벌금	해당기업의 직전 회계 연도 총매출 4% 이상 벌금

### Q5 모든 품목에 같은 규제가 시행되나요?

A 산림전용방지규정은 모든 규제 제품을 취급할 경우에 실사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 복잡성, 원산지 국가의 법적 체계, 관련 인증 제도의 유무 등으로 실사 및 관련 조치들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EU 목재 규제가 적용되던 제품의 경우에는 발효 이전 생산된 제품에 한해 신규 규정 적용에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Q6 국가별 위험도 평가는 무엇인가요? 위험도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EU는 향후 법안의 집행과 관할 당국의 규정 준수 여부 검토를 위해 모든 국가의 산림 파괴 위험성을 평가하여 모든 국가를, 저 위험, 표준 위험, 고 위험 3개 범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관할 당국의 규제품목 취급 사업자 및 제품 수량에 대한 점검 비율이 차별화 되어, 고위험 국가는 9%, 표준위험 국가는 3%, 저 위험 국가는 1%로 낮아 집니다.

또한 저위험 국가의 제품 및 원자재를 취급할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관련 공급망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규제 우회 위험(고위험 및 표준 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유 및 우회 수입 가능성)만 평가하면,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조치 시행이 면제됩니다. 즉 저위험 국가의 제품을 취급할 경우에 실사 관련 의무와 관할 당국 점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셈입니다.(단 실사 관련 정보수집 및 보관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별 위험도 평가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법안이 발효되는 2023년 6월 29일부터는 모든 국가가 표준 위험국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실사가 필요한 모든 사업자 및 대기업 유통 업자는 제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국가를 표준 위험국으로 간주하고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평가 기준은 해당 국가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비율과 규제 품목과 관련된 농지확장 비율, 규제 품목의 생산 동향 등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 <고 표준위험 국가 제품과 저위험 국가 제품 사용시 실사 절차의 차이>



\* 단, 저위험 국가의 제품을 사용한 경우라도, 관련 공급망의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거나, 31조에 따른 제보가 들어올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할 당국에 즉시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위험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Q7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규제 대상 사업자는 해당 제품 및 원자재의 지리적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실사를 통해 해당 지리적 정보가 정확한지, 공급망에 산림 파괴 및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통업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 대상 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와 대기업 유통업자)은 내부적인 실사 절차 및 책임이 명시된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매년 관련 업데이트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사 이행을 위해 해당 기업은 관련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새로이 전용되거나 황폐화 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계약과 관련된 계약 조항, 공급 업체에 대한 설문지, 실사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제 3자 인증 기관의 검증등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증 제도 및 인증 취득이 실사 수행의 일부로 관련 정보로 제공 될 수는 있으나 실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사를 위해 내부적인 검증 및 책임 관계가 명시된 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EU 산림 관측소( EU Forest Observatory)를 통해 규제 기준이 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존 산림파괴 현황에 대한 지도 및 과학적 증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U 산림 관측소의 온라인 플랫폼은 2023년 12월 이후 운영될 예정이며, 규제 대상 기업은 실사 및 위험 평가에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실사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규제 대상 기업이 관련 실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규정 5조에 따라 공인 대리인 및 관련 3자 인증 기관에 서면 위임장을 통해 실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제품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기본적인 법적 책임은 규제 대상인 기업에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실사를 위탁할 경우에 해당 기관 및 공인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에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방어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Q8 위험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규제 대상 사업자와 대기업 유통업자는 실사를 통해 취급 제품의 공급망에 산림 파괴 및 관련 규제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산림전용방지규정 10조는 위험평가에서 다뤄야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험평가 기준 (10조)

- 국가 평가에 따른 제품 및 원자재 생산 국가(이하 원산지 국가)의 위험도
- 원산지 국가의 산림 존재 여부
- 원산지 국가의 원주민 존재 여부
- 원산지 국가의 원주민과의 협력
-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원주민 주장
- 원산지 국가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정도
- 관련 정보의 출처 및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링크
- 부정부패, 데이터 위조, 법치 여부, 국제 인권 문제, 분쟁과 관련해 원산지 국가에 대한 UN 및 EU이사회의 제재 여부
- 제품 및 원자재가 생산된 토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제품 공급망의 복잡성
- 규제의 우회 위험 또는 원산지가 불명확하거나 산림전용·황폐화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혼합 위험
- 산림전용방지규정의 규제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의 결론
- 해당 기업이 관련 공급망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31조에 따른 제보 및 해당 기업의 규제 비 준수 이력에 관한 정보
- 해당 제품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모든 정보
-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 정보 (규제 위원회가 인정한 자발적 제도를 포함한 3자 인증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해당 기업은 공급계약의 계약 조항, 공급 업체에 설문조사, 실무자 파견, 제 3자 인증기관의 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에 제시된 위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기준 위반 위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조치는 해당제품이 역내 출시 되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독립 적인 감사 수행, 위험 관리 보고, 준법 감시인 임명 등의 조치들을 통해 위험을 완화 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향후 관할 당국의 점검에 대비가 필요 합니다.

### Q9 실사 선언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대기업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규제가 시행되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규제 품목의 제품을 출시, 취급 하기 위해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규제 품목을 수입, 수출 시 국가별 세관 및 관련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집행위는 향후 기업이 제출하는 실사 선언서 관리를 위해 2024년 12월 30일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해당 시스템에 따라 회원국 세관 및 관할당국에 제출된 실사 선언서는 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될 예정입니다.

### ○10 어떤 정보를 보관 혹은 공시 해야 하나요?

⚠ ▶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향후 관할 당국의 실사 신고서 및 실사에 대한 검토에 대비하여 실사 및 제품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제출 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유통업자간에 수집 해야 할 정보에 차이가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이에 더해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도 부가 됩니다.

### 사업자(와 대기업 유통업자) 가 수집 및 보관해야 할 정보 (9조)

- 제품명 및 제품에 포함된 규제 품목에 대한 설명 (목재의 경우 해당 수목의 이름 및 전체 학명)
- 제품의 역내 시장 출시 수량
- 제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
- 제품 및 원자재가 생산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와 생산 날짜
- 사업자에게 제품 및 원자재를 공급한 업체명,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공급업체)
- 사업자가 제품 및 원자재를 공급한 업체명,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판매처)
- 제품 및 원자재가 산림 파괴와 관련이 없다는 검증 가능한 정보
- 제품 및 원자재가 생산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검증 가능한 정보



### 중소기업 유통업자가 수집 및 보관해야 할 간소화 된 정보 (5조)

- 제품명
- 등록된 상표 및 상호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해당 제품을 제공한 사업자 및 유통업자의 웹사이트 주소
- 해당 제품의 실사 선언서 번호



### 대기업 사업자(와 대기업 유통업자)가 공시해야 할 정보 (12조)

- 제품명 및 제품에 포함된 규제 품목에 대한 설명 (목재의 경우 해당 수목의 이름 및 전체 학명)
- 제품의 역내 시장 출시 수량
- 제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
- 실사를 통한 위험 평가의 결론 및 위험 완화 조치와 관련된 정보
- (해당될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제품 원산지의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혐의 과정



### Q11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기업이 규제를 위반하고 산림 파괴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제품의 가치에 비례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벌금 수준은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해, 최대 해당 기업의 전년도 회계 기준 전체 연간 매출액의 4%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해당 관련 제품 및 수익 몰수, 최대 12개월 간 공공 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 자격 박탈 등의 제재도 언급 되었으며, 위반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제품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된 실사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간소화된 실사가 금지 될 수 있습니다.

### Q12 현재 입법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향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산림전용방지규정은 현재 입법이 완료되어 발효된 상황이나, 법안 발효 1년 이내 규제 지역과 규제 품목의 확대를 두고 법안 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입법 과정에서 EU의회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져 고무와 목탄, 종이 제품 등의 규제 품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안 검토 과정에서도 기존 EU 의회에서 제안했던 기타 육류, 옥수수 등의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바이오 연료(HS Code 382600)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역내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공급망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안의 31조에 따르면 실사 및 실사 선언서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관할 당국은 사업자 및 유통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입증된 자료가 포함된 제보를 수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관할 당국은 사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 및 청문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보가능성에 유의하여 철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 01 │ KOTRA 지원 사업

### 경제통상협력데스크

- 우리나라 산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점 무역관을 데스크로 지정, 주요국 경제통상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
  - 브뤼셀(EU), 워싱턴(미국), 베이징(중국), 도쿄(일본) 4개소 운영 중
- 브뤼셀 데스크 정보 열람

EU 주간브리핑	경제통상리포트	심층보고서	동영상 뉴스
매주 수요일 우리 기업과 연관된 EU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뉴스레터	국내 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보고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	주요 이슈에 대한 웨비나, 인터뷰 영상
주간브리핑	EU 탄소국경조정제	EU핵심원자재법과 원자재 관리정책	KOTRA 비즈니스 채널

### EU 경제통상 핫라인 EU 규제·정책 관련 기업의 문의, 애로에 신속 대응

- **브뤼셀** 브뤼셀무역관 ① +32-2-205-0081 ⑤ unoin@kotra.or.kr

# 02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국내 지원 부처 및 기관

부처/기관명	웹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index.do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s://global.at.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intro/kosme_intro.html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Main/appl/Main.asp	
한국표준협회	https://www.ksa.or.kr/ksa_kr/index.do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index.do	

부처/기관명	웹사이트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index.do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	https://www.compass.or.kr/	

### 관련 EU 기관 자료

자료명	웹사이트		
산림전용방지규정법안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 L_2023.150.01.0206.01.ENG&toc=OJ%3AL%3A2023%3A150%3ATOC		
산림전용방지규정에 대한 집행위 FAQ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requently-asked-questions-deforestation-regulation_en		

# 03 | 알아두면 유용한 ESG 규정 체계

EU에서는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전용방지규정 외에도 다양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규정 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전용방지규정은 환경 및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통상 연계 제재 입니다.

구분		관련 법안	비고
<del>공급</del> 망 실사 의무	포괄적	공급망실사지침(CSDDD), 프랑스 기업실사 의무법, 독일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 등	
	특정 항목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정보공시	기업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칙안
	제품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통상 연계 제재	수출입 통제	분쟁광물규정, 산림전용방지규정, 강제노동결부상품 수입금지규정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과세	탄소국경조정제(CBAM)	미국 공정전환경쟁법

# EU 산립전용방지규정 Q&A북

발 행 일 2023년 7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KOTRA 브뤼셀 무역관 +32-2-205-0081

ISBN 979-11-402-0680-3 (93320)

979-11-402-0681-0 (95320)(PDF)

Copyright @ 202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동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단순 참고자료로 KOTRA 의 공식의견이나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또는 규정 해석에 대한어떠한 책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U 산립전용방지 규정



